

예 산 총 칙

2010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04,875,152	9,146,255
일반회계	283,638,948	8,509,168
특별회계	21,236,204	637,086
기타특별회계	21,236,204	637,086
주택사업특별회계	6,555	19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97,817	32,935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1,821,796	54,654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532,106	45,963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783,019	23,491
담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74,330	5,230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541,825	16,255
기반시설특별회계	451,965	13,559
수질개선특별회계	14,826,791	444,804

제 2 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제 4 조 (지방채 발행) : "해당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 : "해당없음"

제 6 조 (계속비사업) : "해당없음"

제 7 조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4,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는 것으로 한다.